

##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정이유

-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, 임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,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명기(안 제2조)
-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명기(안 제3조)
-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준용 내용 삭제(안 제12조)

#### 4. 의견 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88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| 조례안 내용 | 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

##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 설치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호 각 호의 사람 중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군수, 주민복지과장, 가족행복과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

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영동군청 소속 복지정책, 희망복지, 여성정책 및 방문보건 각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실무분과 설치)”를“(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”을 “구성하되, 다음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읍·면 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)”을“(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·면 보장협의체”라 한다)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대표협의체) 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, 주민복지과장, 가족행복과장, 보건소장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실무협의체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2조(대표협의체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따라 설치된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----- 위원장과 부위원장-----.</p> <p>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호 각 호의 사람 중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군수, 주민복지과장, 가족행복과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실무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</p> |



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1. ~ 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5조(읍·면 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)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·면 보장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-----  
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) -----  
---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